

의안번호	2121245
의 퇴 인	박수영의원
회 답 일	2023. 5. 2.
추 계 번호	23D1590

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2121245)

비용추계서 요약

I. 재정수반요인

- 보험사기행위업자공표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11조의2 신설)
-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업자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함

II. 비용추계 결과

- 추가재정소요 : 향후 5년 간 총 1억 1,000만원, 연평균 2,200만원

[표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4~2028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합 계	연평균
보험사기행위업자공표 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(안 제11조의2 신설)	22	22	22	22	22	110	22

차 례

I. 비용추계 결과	1
II. 재정수반요인	1
III. 비용추계의 전제	2
IV. 비용추계 상세 내역	2
1. 추계의 대상 및 방법	2
2. 공표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11조의2 신설)	3
3. 추계 결과	4

일러두기

-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 -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 -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-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행위업자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부터 매년 2,200만원씩 2028년까지 5년간 총 1억 1,000만원(연평균 2,200만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4~2028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합 계	연평균
보험사기행위업자공표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11조의2 신설)	22	22	22	22	22	110	22

II. 재정수반요인

- 보험사기행위업자공표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11조의2 신설)
-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, 손해사정업자, 의료기관 등이 보험사기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, 처벌내용, 기관명 또는 상호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,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험사기행위업자공표심의위원회(이하 “공표심의위원회”)를 설치·운영함

Ⅲ. 비용추계의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, 본 추계에서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유사 위원회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여 추계함
- 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추계에서는 법안의 심사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

Ⅳ. 비용추계 상세 내역

1. 추계의 대상 및 방법

-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은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임

<비용추계 산식>

추가재정소요 = 공표심의위원회 설치 = 위원수 × 회의수당 × 연간 개최회의수

- 1) 위원수 = 11명으로 가정
 - 2) 회의수당 = 1인당 25만원으로 가정
 - 3) 연간 개최회의수 = 연간 8회로 가정
-

2. 공표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11조의2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금융위원회의 유사 위원회 사례를 참조하여 향후 5년간 총 연간 1억 1,000만원으로 추계함
 -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¹⁾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로서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 등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상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으며, 구성원 중 민간위원은 6인이며, 2023년 예산은 2,163만원(6인×257,500원×14회)임
 - (위원수) 본 추계에서는 변호사, 보험회사, 의료계, 자동차 정비업계 등 민간위원 11명으로 가정
 - (회의수당) 1인당 1회 25만원²⁾으로 가정
 - (연간 개최회의수) 연간 개최회의수는 분기별로 2회씩 총 8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－ 금융위원회에 따르면, 2022년 보험사기확정판결건수 약 2,248건(추정치) 중 설계사, 의료진 등 보험업 관련 건수는 약 100건으로 추정
 - (소요비용) 공표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2,200만원(11명×25만원×8회)으로 산출

1) 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」 제21조(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)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(이하 "자조심")를 증선위에 둔다.

② 자조심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이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

2.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사항

3.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재심사항

4.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2조(자조심의 구성) ① 자조심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증선위 상임위원

2.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

3.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담당관

4. 감독원 공시·조사 담당 부원장보

5. 금융관련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증권·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, 교수 등 전문가중에서 증선위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5인

2)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,000원내(서면심사 100,000원내)에서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,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,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·식비·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(220목) 또는 일반수용비(210-01목)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(기획재정부, 「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, 152쪽)

[표 2] 공표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4~2028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합 계
공표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(안 제11조의2 신설)	22	22	22	22	22	110

3.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부터 매년 2,200만원씩 2028년까지 5년간 총 1억 1,000만원(연평균 2,200만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4~2028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합 계	연평균
공표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(안 제11조의2 신설)	22	22	22	22	22	110	22

국회예산정책처	행정비용추계과
과장	오명희
추계세제분석관	여은구
연락처	02-6788-4673
	cecil@nabo.go.kr
